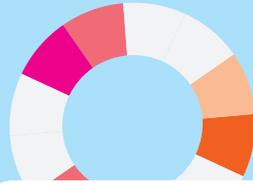


#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

- 01 무리하지 않은 운항계획 수립
- 02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준비하고, 비상연락체계 유지
- 03 무면허조종 금지(5마력 이상) 및 음주 조종 금지
- 04 원거리(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) 수상레저 활동신고 (해경관서)
- 05 야간수상레저활동 금지(야간운항장비 비치시 예외)
- 06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(워터슬래드는 안전모 착용 필수)
- 07 출항 전 점검 생활화
- 08 기상을 수시로 확인하고,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입항
- 09 견시를 충실히 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
- 10 긴급상황 대비 해로드 앱 설치



# 해양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1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명구조를 실시하며, 긴급신고전화 119, 가족 친지 등에게 정확하게 연락
- 2 현장에서의 구조요청 조난신고는 발연번호와 호루라기, 랜턴을 이용한 기적과 빛 신고 등을 활용
- 3 스마트앱 “해로드” 이용한 구조요청



위의 QR코드 이용하여 해로드 앱을 설치한다.

※ GPS를 반드시 켜놓을 것

- 1 현위치 누르고
- 2 위치(경·위도) 확인
- 3 구조요청을 누른다



해양일 경우

- 1 해양을 누르고
- 2 보내기 누른다.



내륙일 경우

- 1 내륙을 누르고
- 2 보내기 누른다.

# 수상레저 활동시 이것만은

# 꼭!



해양긴급구조신고  
해로드 앱



인천해양경찰서



##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및 절차

### ●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



수상오토바이



세일링요트 (20톤미만)



고무보트 (30마력이상)



모터보트 (20톤미만)

●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는 제외

### ● 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

- 1 안전검사 신청
- 2 안전검사증교부
- 3 책임보험 가입
- 4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
- 5 번호판 부착

### ● 기구 등록 사항 등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

- 기구 소유 1개월 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 - 과태료 **40만원**
-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
- 10일 이내 1만원,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(**최대 30만원**)
-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- 과태료 **30만원**
-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
- 10일 이내 5만원,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(**최대 30만원**)



## 수상레저 활동시 이것만은 꼭!

### ● 이것도 챙겨봅시다

- 출발 전 연료량 확인은 필수
- 돌아오는 연료도 확인
- 연료 및 공급상태확인
- 엔진오일(윤활유) 확인

항상  
**50%**  
이상 유지

### ● 배터리 방전, 예방할 수 있어요

- 엔진 정지 후 배터리 스위치 OFF
- 배터리 정격전압 확인
- 배터리 사용가능 용량 준수
- 점화플러그 교체시기 확인



### ● 연료고갈로 인한 표류는 이제 그만!

- 스크류와 엔진 고정상태 확인
- 어망, 장애물 위치 확인
- 시동 후 냉각수 배출여부 확인
- 엔진 세정을 충분히 (입항 후)



※ 특히, 냉각수라인 청수플러싱 필수

## 수상레저 활동전 기억하기



### ● 하인리히 법칙: 사소한 것을 잘 지키면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

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법칙



#### ● 활동자 개인적 결함

- 안전의식결여
- 주의의무 태만

#### ● 경미한 사고 발생

- 단순표류 사고
- 기관고장사고

#### ● 대형 사고 발생

- 인명 사상 사고
- 충돌, 화재 사고

### ● 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

- 1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**1000만원** 이하의 벌금
-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
- 1년 이하의징역 또는 **1000만원** 이하의 벌금
- 3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
-과태료 **10만원**
- 4 월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와 수상레저기구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- 과태료 **20만원**
- 5 야간수상레저활동(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)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- 과태료 **60만원**